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2. 9. 28.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8호로 2022년 9월 18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2년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22.05.19.시행)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일부개정(‘22.06.02.시행)되어 이를 반영하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의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05.19.시행)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삭제(안 제4조~제8조, 안 제15조, 안 제23조)
- 나. 규정 삭제로 인한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안 제17조, 안 제18조)
- 다. 자문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을 위한 단서 신설(안 제2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생략.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22.05.19.시행)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규정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4조),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5조),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안 제6조), 가족 채용 제한(안 제7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8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안 제15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안 제23조) 규정을 일괄 삭제함.
- 안 제17조, 안 제18조는 중복 규정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되어있던 용어 설명이 삭제된 부분을 다른 관련 조항에서 재정비함.
- 안 제29조는 자문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특정 성별이 자문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검토결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 없는 중복규정으로서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개정 시 그에 맞추어서 제때에 개정해 주지 않으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이 생겨 집행상 혼란만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첩되는 관련 법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 정비 및 필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장 총칙		제3장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1조	목적	제17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제2조	정의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19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4조	공직자의 의무	제20조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21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22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6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23조	비밀누설 금지
제7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24조	교육 및 홍보 등
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제25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9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4장 징계 및 벌칙	
제10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26조	징계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	제27조	벌칙
제12조	수익계약 체결 제한	제28조	과태료
제13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6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장 총칙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조	목적	제13조	국내외 활동 제한 등
제2조	정의	제14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15조	영리행위의 신고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6조	삭제
제4조~ 제4조의5	삭제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8조	성희롱 금지
제6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0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21조	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제8조의2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22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9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23조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10조	삭제	제24조	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제10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0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1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2조	삭제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이하 생략>